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-132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등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위원회의 운영(안 제4조)
- 다.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(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)
- 라.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4항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 : 2022. 10. 6. ~ 10. 26.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 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 - 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(2022. 11. 1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환경교육”이란 국민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,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학교환경교육”이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.
3. “사회환경교육”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 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-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「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」 제22조의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
2.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
3.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4.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5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6.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7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

제6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의 개발 및 보급
2. 공공기관, 군부대, 기업 및 사회·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·지원
4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

제7조(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)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) ① 구청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9조(환경교육주간)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.

1. 기념행사
2. 환경교육 관련 기관·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
3.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
4.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

제10조(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·교구 개발 및 보급
2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
3.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·협력
4.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
5.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
6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위탁·운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환경교육의 위탁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, 사회환경교육기관,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경비 지원 및 보조)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기관,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,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
2.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, 장소 등 제공
3.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3조(홍보 및 표창)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·기관별·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발생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 소요됨

4. 작성자 :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박지혜 (☎ 3153-9253)